

##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

[시행 2018. 8. 1.] [국토교통부훈령 제1058호, 2018. 8. 1., 일부개정]

국토교통부(건설안전과), 044-201-3582

**제1조(목적)** 이 지침은 「도로법」 제77조 및 「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」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덤프트럭의 과적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현장에 축중기설치를 의무화하고, 건설공사 관계자(발주청·건설사업관·리용역업자·시공사)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지침은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.

**제3조(대상현장)** ① 「도로법」 제10조에 따른 도로를 이용하는 사토·순성토 또는 건설폐기물 중 어느 하나의 운반량이 10,000m<sup>3</sup> 이상인 건설공사(진행 중인 공사는 잔량이 10,000m<sup>3</sup>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) 현장에는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기준 미만의 현장이라도 과적의 우려가 있어 축중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 또는 도시가스 시설에 필요한 배관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축중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사업부지 중 50퍼센트 이상이 도로 부지인 경우

2. 공사장이 3개소 이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

**제4조(축중기 설치·운영방법)** ① 건설공사 계약자(시공사)는 10톤 이상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축중기는 덤프트럭이 토석 등을 적재하고 도로로 나갈 때 중량을 쉽게 측정할 수 있도록 경사지나 굴곡지가 아닌 평탄한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.

③ 축중기는 차량의 축중에서 계량하고자 하는 측정축이 타축과 수평이 유지된 상태에서 계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.

④ 축중기 운영방법은 「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」에 따라 운영하되, 운전자가 측정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⑤ 축중기는 청소나 교정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상시계측이 가능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.

**제5조(공사계약 시방서에 명기할 사항)** 축중기설치 대상현장을 운영할 발주청은 다음 각호 사항을 공사계약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.

1. 수급인, 하수급인 및 시공참여자는 공사차량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,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79조제2항에서 정한 운행제한 기준(총중량 40톤, 축하중 10톤 등)을 초과하여 운행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.

2. 「도로법」제10조에 따른 도로를 이용하는 사토·순성토 또는 건설폐기물 중 어느 하나의 운반량이 10,000㎥ 이상인 건설공사(진행 중인 공사는 잔량이 10,000㎥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) 현장에는「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」에 따라 축중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축중기 검사 등)** 건설공사 계약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한 축중기에 대하여 「차량의 운행 제한 규정」에 따라 정기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축중기 설치 비용 반영 방법)** ① 축중기 설치 대상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발주청에서는 이 지침에 따라 축중기 설치비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, 이미 발주되어 운영 중인 현장은 설계변경 시 반영한다.

② 설치 및 운영비용은 표준품셈에서 정한 축중기 설치·해체 및 손료비용을 참고하여 반영한다.

**제8조(유효기간)** 이 훈령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 훈령 334호)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칙 <제1058호,2018.8.1.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